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590

발의연월일: 2024. 10. 7.

발 의 자: 박수민 · 김민전 · 김소희

김선교 • 박준태 • 조지연

이인선 • 박정하 • 이종욱

서명옥・김 건・박수영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1. 12. 21.개정을 통해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2022. 12. 31. 개정을 통해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그 기간을 각각 연장하였음.

그런데 위 개정법의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였는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연부연납 기간이 적게는 5년, 길게는 10년이나 차이가 나게 되었음.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의 취지는 상속재산이현금으로 환가하기 어려운 경우 일시에 징수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에게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편익을 제공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상속이 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납 기간의 차이를 둘 경우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위 개정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연부연납 기간

중에 있거나 개정법 시행 후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연부연납 세액을 제외하고 남은 상속세에 대하여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을 적용하려는 것임(법률 제1859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9195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 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859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연부연납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2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어 연부연납 기간 중인 경우 부칙 개정일 이전 기 납부한 상속세액을 제외한 남은 상속세액(납부기한이 연장되어 이후 납부일이 도래하는 상속세액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법률 제19195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의 제목 "(연부연납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를 "(연부연납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를 "(연부연납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납부할 세액 2천억원 미만의 상속세에 대한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연부연납 기간 중에 있는 분 또는 이 법시행 이후 납부할 세액 2천억원 미만의 상속세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분에 대해서는 부칙 개정일 이전 기 납부한 상속세액을 제외한 남은 상속세액(납부기한이 연장되어 이후 납부일이 도래하는 상속세액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제71조제2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법률 제1859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신 설>

법률 제19195호 상속세 및 중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연부연납 기간에 관한 경 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상속 이 개시된 경우의 상속세 연부 연납기간에 관하여는 제71조제 2항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다. <단서 신설>

개 정 안

법률 제1859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2(연부연납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2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어 연부연납 기간 중인 경우 부칙 개정일 이전 기납부한 상속세액을 제외하고 향후 납부할 상속세액(납부기한이 연장되어 이후 납부일이 도래하는 상속세액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법률 제19195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연부연납 기간에 관한 경 과조치 등) -----

--. <u>다만</u>, 이 법 시행 전에 상
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연부연
납 기간 중에 있는 분 또는 이

법 시행 이후 납부할 세액 2천 억원 미만의 상속세에 대한 연 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분에 대해서는 부칙 개정일 이전 기 납부한 상속세액을 제외한 향 후 납부할 상속세액(납부기한 이 연장되어 이후 납부일이 도 래하는 상속세액을 포함한다) 에 대하여도 제71조제2항제1호 가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